

학습자료 [경비원 직무교육(이론2)]

▣ 1차시 - 경비계획에 따른 경비구역

■ 출입통제구역의 구분

제한지역, 통제지역, 배제지역

■ 철조망의 장점

△설치와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함

△유지비가 적게 듦

△경비의 측면에서 볼 때 외부 상태의 관측이 가능함

■ 경비조명의 종류

△ 백열방식등

△ 가스 방전방식등

△ 석영방식등

■ 경비조명의 설치 방법

△ 조명시설물은 경계구역에서 이용되며, 진입등은 경계지역 내에 위치

△ 조명은 직접적으로 사고 발생 지역에 비춰야 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떨어져 있어야 함

△ 경계지역 내의 건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 조명을 직접적으로 건물에 비춘다.

△ 조명시설의 위치는 경비원의 눈을 부시게 하는 것을 피하며, 그림자가 새기지 않도록 해야 함.

■ 패드록의 종류

△ 전기식 잠금장치

△ 일체식 잠금장치

△ 카드식 잠금장치

△ 기억식 잠금장치

■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 범죄의 실행이 종료된 자는 현행범이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상 준현행범

△ 준현행범은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하며, 법에서는 4가지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2)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자

(4) 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자. 따라서 위 4가지 경우만 준현행범에 해당되며,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 CCTV(폐쇄 회로 텔레비전)

경비원의 감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 복도나 입구, 창문, 금고, 귀중품 보관실 등의 정면이나 측면에 설치하여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며 한 사람에 의해 여러 곳을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는 최근 사용이 보편화된 감시기기

▣ 2차시 - 경비원의 순찰 · 방법활동

■ 준현행범

△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누구인지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자

■ 지하주차장 순찰·방범활동 중 범죄 특징

- △ 피의자는 20 ~ 30대 초반으로 절도 등 전과자가 대부분입니다.
- △ 범행시간은 주로 오후 시간대이며, 피해자의 차량 및 금품 등 강취 . 도주합니다.
- △ 범행 대상은 30 ~ 40대 부유층 주부로서 자가운전자입니다.
- △ 부녀자를 칼로 위협, 승차시킨 후 눈과 입을 테이프로 붙이고 손발을 결박한 다음,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도주, 호텔 등에 감금 또는 부녀자가 소지한 현금.보석 등을 1차 강취 후, 가족에게 몸값 요구하기도 합니다.

■ 범죄 기도자 발견 착안점 중 이상한 거동

- △ 단지 부근의 노상에서 엔진을 시동한 채로 주차하고 있는 자
- △ 단지 주변 혹은 단지 내를 배회하는 자
- △ 무엇인가 침착성이 결여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 △ 불일 없이 또는 용무가 끝났는데도 단지 내에 계속 머물고 있거나 주차 중인 자동차 내에서 자고

■

▣ 3차시 -범죄학 일반

■ 성범죄의 유형

- △강간
- △강제추행
- △청소년 성매매

■ 성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 △정서적 장애 및 성의식 발달의 문제
- △가정의 복잡한 성관계
- △약물 복용
- △왜곡된 성의식과 성경험과의 관계

■ 가정폭력의 유형

- (1)배우자 학대

- (2)소아·청소년 학대
- (3)노인학대
- (4)매 맞는 남편

■ 마약범죄의 특징

- (1)금단증상
- (2)내성
- (3)의존성
- (4)재발성

■ 조직범죄의 유형

- (1)정치·사회적 조직범죄
- (2)약탈적 조직범죄
- (3)집단 내부 지향의 조직범죄
- (4)신디케이트 조직범죄가 있습니다.

■ 청소년비행

주로 또래집단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점차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청소년의 사이버 범행이 증가하면서 지능화, 흉포화, 집단화, 작인 일에도 이해와 타협보다 행동이 먼저 가해지는 단순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범죄

▣ 4차시 -재해예방 중 화재예방(2)

■화재

- (1)일반화재
- (2)유류 및 가스화재
- (3)전기화재
- (4)금속화재

■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불 쪽으로 접근
-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음
-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잡

△불길 주의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

■ 화재의 소화방법

- (1) 냉각소화
- (2) 질식소화
- (3) 제거소화
- (4) 억제 소화유사시에

■소화기의 설치 및 관리 요령

-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설치합니다.
-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합니다.
-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업체에서 약제를 재충약해야 합니다.

■화재의 조건

- △불자리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불자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우발적인 것
- △불에 의한 연소 작용이 있을 것
- △인명에 피해를 주거나, 재물을 소실시켜 손해를 초래시킬 것

■전기화재의 주요 요인

- △전선의 합선 또는 단란에 의한 발화
-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 △누전에 의한 발화

■어린이 불장난 화재 예방

- △어린이들에게 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모든 화기의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불조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 △어린이들에게 119허위신고(장난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합니다.
- △성냥, 라이터 등은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고층건물 화재 예방요령

- △고층건물에는 화재에 대한 신속한 감지를 위하여 건물 전체에 자동 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여 집중적인 감시를 합니다.

△화기를 사용하는 기구나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셔야 합니다.

△고층건물이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계획서 및 방재계획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합니다

△화재의 성장을 한정된 범위로 억제하기 위하여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또한 방연 구획도 병행하도록 합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의 제어 방법

△흡식, 배기, 차단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

△계절별 화재 발생 건수는 겨울철 > 봄철 > 가을철 > 여름철순입니다.

■화재 발생 원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기화재입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서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화재신고 요령

△화재 발생 주소 및 건물명과 화재가 발생된 층을 알립니다.

△건물의 간략한 소개를 합니다.

△화재의 종류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알립니다.

△화재신고 시 화재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도 알립니다.

■소화기 비치의무를 가진 차량

△2017년 현재 소화기 비치의무를 가진 차량은 화물차, 승합차, 7인승 이상의 승용차입니다. 승합차는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하고, 당연히 버스도 포함됩니다.

※5인승 승용차에 대한 의무 비치는 2021년부터 실시할 예정

■공장 화재에서 가장 많은 화재 원인

△공장의 경우에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관계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보다 많습니다.△

■ 발화 초기 발견자의 초기 대응

△소화에만 정신이 팔려 화염이나 연기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체 소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로 신고하고, 신속히 안전지구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연기와 화염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반드시 방화문을 닫으면서 대피합니다.

△소화 약제는 화염이나 연기에 방사하지 말고 화원에 방사해야 합니다.

■ 건물 화재 시 피난 요령

△피난 시설 및 피난기구 없이 아래층으로 피난할 때는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갑니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피난합니다.

고층건물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춰 안에 갇힐 염려가 있고,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화재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장소

△2016년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화재발생 건수는 단독 주택(6,248건) > 공동 주택(4,907건) > 자동차(4,564건) > 음식점(2,777건) > 공장시설(2,682건) > 기타 건축물(2,072건) > 창고시설(1,233건)의 순서입니다.

■ 겨울철 화재예방 요령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합니다.

△난로 주위에는 항상 소화기나 모래 등을 비치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열 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도록 하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몸 전체를 잡고 뽑습니다.

■ 의식이 없는 사람의 응급처치로 틀린 것은?

△공기가 통한 길(숨통)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숨통 확보에 유의하고 수평으로 반듯이 눕게 합니다.

△머리를 부딪혔을 때는 수평으로 반듯이 눕히거나 머리를 약간 높입니다.

△안정과 보온에 유의하며 젖은 옷가지는 갈아 입히고 전신을 모포 등으로 덮어 줍니다.

△안색이 창백할 때는 발 쪽을, 붉을 때는 머리 쪽을 높입니다.

■ 연소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말하며 이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연물, 산소(공기), 점화

원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 5차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테러의 특징

△얼굴 없는 전쟁

△전쟁보다 잔악

△선전포고 없는 공격

△테러는 광범위한 지역보다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물 안에 있을 때 지진 대피요령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합니다.

△작은 지진이더라도 즉시 불을 끄는 습관과 서로 알리고 협력하여 초기 소화를 합니다.

△비상시의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집 밖은 위험이 가득하므로 먼저 집 밖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건물 밖에 있을 때 지진 대피요령

△건물이나 블록담이나 대문, 기둥과 같은 것으로부터 멀리 이동합니다.

△야외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합니다.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는 물건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합니다.

△빌딩가 등에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만 무조건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테러 형태

(1) 암살,저격

(2)납치 · 인질

(3) 폭파 및 방화

(4) 화생방 테러

(5) 사이버 테러

■테러 발생 시 대피요령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기

△계단은 가급적 한쪽만 이용하기

△건물 높이 2배 이상 거리로 탈출하기

※지하 주차장은 건물 붕괴 시 매몰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가져가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진

△지구 내부의 활동과 판구조 운동으로 인해 지구 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6차시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위급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것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119나 응급의료기관에 전화할 것

△응급의료요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행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 행동요령에 따른 3C는 현장조사(Check) ➡ 119신고(Call) ➡ 처치와 도움(Care)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응급상황 행동요령 중 현장조사의 내용

△현장은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합니다.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주위에 몇 명의 부상자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처치 활동 시의 일반적 유의 사항

△긴급한 환자를 우선 처치합니다.

△응급처치원임을 밝힙니다.

△부상자·환자의 상태에 맞게 자세 교정을 합니다.

■심폐소생술 중 자동제세동기 작동 순서

△전원을 켭니다. (초록색 버튼)

△패드를 꺼내어 패드에 있는 그림대로 몸에 부착하고 제세동기와 연결합니다.

△분석합니다는 말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집니다.

△제세동이 필요하다면 충전 중이라고 말이 나오고 떨어지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떨어집니다.

■심폐소생술 관련 윤리

△선익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라고 알려진 응급의료 법률 제5조 2항에 의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로 규정됨으로써, 선익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를 말하며 심장마비의 경우 신속히 조치하지 않을 시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신속히 실시하여야

▣ 7차시 -경비원의 안전보건

■경비원의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

(1)넘어짐

(2)떨어짐

(3)작업관련질병

(뇌, 심장 등)

(4)부딪힘

(5)끼임

■경비원 안전보건 체크 사항

△보행 전 장애물 확인

△바닥 물기, 기름기 제거

△작업 시작 전 작업 완료 후 스트레칭

△야간 순찰 시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경비원의 재해 내용과 예방대책

△주차장 바닥 오일에 미끄러져 넘어짐-바닥의 물기, 오일 등은 즉시 제거

△개구부 청소 중 떨어짐-짐 방지망 설치

△강풍에 방화문이 닫히면서 얼굴에 부딪힘-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

※경비실 출입문에 손이 끼어 부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1)손가락 끼임 예방 조치 (완충장치, 스톱퍼 등)
(2)출입문에 끼임 주의 표지를 부착합니다.

■고혈압의 예방 및 관리

△스트레스 해소

△표준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한국인의 식염 섭취량은 15~20g이 되는데 이를 6g 이하로 줄여 음식을 싱겁게 섭취해야 합니다.

■업무에 의한 과로의 원인

△책임감 높은 일의 연속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흡연, 음주, 폭식 등을 불러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쟁적이고, 성취욕이 강하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심혈관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동맥경화를 촉진해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된다.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상 i)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ii)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것

▣ 8차시 -경비원의 성희롱예방 및 직업윤리

■성희롱의 잘못된 인식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

△성희롱은 성적 충동 때문에 발생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

※성희롱의 의도는 없으며 단지 친밀감의 표현하여도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

△시각적 성희롱

※성희롱은 일방적인 행위로서 상호 간의 합의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음담패설을 하거나 음란한 그림·사진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및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감을 나타냈을 경우 즉각 중지합니다.

■경비원의 직업윤리

△철저한 책임의식

△목적의식

△사명감

△확고한 보안의식

■직업윤리에 따른 근무수칙

△경비에 관한 기본 임무를 확실히 숙지합니다.

△배치된 장소에서 책임을 다합니다.

△소속 상사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근무교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구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 하는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로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규율 하는 행위자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주, 근로자로 보며 고객은 제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 하는 피해자는 근로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규율 하는 피해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특징

△피해자는 행위자의 처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피해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도 우려가 되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성희롱은 행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어렵습니다.

△20-30대의 젊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 차원에서의 대안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의 부서 전환 배치 정도로 대처하고 있다. 많은 기업의 조직문화가 성희롱에 관대한데, 이러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